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20년 3월 | 2020/03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지난 호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코로나 19 (COVID-19) 팬데믹: 국제사무국 및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PCT 출원의 제출 및 처리 관련 업무 지속

2020년 3월 17일부터 WIPO는 직원 대다수의 원격근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과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PCT 출원의 제출 및 처리 관련 업무를 지속합니다.¹ 추가 정보는, 아래 보도자료 PR/847/2020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04.html

본인의 PCT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관청들에도 확인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안내한 바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호 뉴스레터의 "유용한 도움말"에서, 처리할 용무가 있는 PCT 관청이 특별 휴무에 들어가 기한을 놓치거나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회사가 강제 임시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해결책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¹ (역주) 국제사무국은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 발행 이후, 종이 서류의 서면 송부는 중단하였으며, 본인의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긴급하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8.html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품질보고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각자 국제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시행한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² 아래에서 2019 년도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quality/authorities.html

2019 년 PCT 연례보고서 - 요약본

"2019 년 PCT 연례보고서 - 요약본"은 PCT 이용의 주요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2019 년 PCT 연례보고서에 보고된 통계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자료로, 이제 아래에서 10 개 공개언어 모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430

영어 외 다른 언어는 페이지 우측에서 해당 언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0 년 4 월 26 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 녹색 미래를 위한 혁신

2020 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의 테마인 "녹색 미래를 위한 혁신"은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을 녹색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에 두는 것입니다.

세계 지식재산의 날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WIPO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ip-outreach/en/ipday/

직접 개발한 획기적인 친환경 혁신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혁신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신 경우에 한해, WorldIPDay@wipo.int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데 혁신과 지식재산권이 수행하는 역할을 WIPO 와 함께 탐구해 보십시오.

지난 2000 년 WIPO 회원국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보편적 이해도를 높이고자, 1970 년 WIPO 설립협약(WIPO Convention)이 발효된 날인 4 월 26 일을 세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후로 세계 지식재산의 날은 매년 전 세계의 다른 이들과 함께 혁신과 창의성을 고무하는 데 지식재산권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²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단락 21.26 및 21.27 에 따름.

유용한 도움말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PCT 에 따른 기한을 놓친 경우 취할 수 있는 해결책

Q: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리사인데, 곧 출원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출원과 함께, 계류 중인 PCT 출원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19 (COVID-19) 팬데믹이 미칠 영향과, 아래 중 하나의 상황에서 특정 PCT 기한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출원 전인 출원과 계류 중인 PCT 출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 처리할 용무가 있는 PCT 관청이 특별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
- 저희 법률사무소가 강제 임시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본 유용한 도움말에서는 상기 시나리오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처리할 특정 용무가 있는 수리관청 또는 기타 PCT 기관이나 국제사무국이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

PCT 규칙 80.5(i):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SISA), 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지정/선택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관청 또는 정부 간 기구가 특정일에 예외적으로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해당 날짜에 만료되는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PCT 제 22 조 및 제 39 조에 따른 기한을 포함한) 모든 PCT 기한은 PCT 규칙 80.5(i)에 따라, 해당 관청이나 기관이 열리는 날인, 그 익일까지 연장됩니다.

PCT 규칙 80.5(i)은 PCT 에 따른 모든 기한에 적용되며, 파리협약(the Paris Convention)의 상응 규정이 우선권기간에 적용됩니다(아래 파리협약 제 4 조(C)(3) 참고).

PCT 제 8 조 및 파리협약 제 4 조(C)(3): (신규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출원을 출원하지 못한 경우, 파리협약 제 4 조(C)(3)에 따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12 개월의 기한이 지난 후에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관청이 휴무일인 경우가 아니라 관련 수리관청이 휴무일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습니다.

대리인이나 출원인의 직장이 임시 휴무인 경우

PCT 규칙 26 의 2.3³ 및 49 의 3.2⁴: 12 개월의 우선권기간 내에 국제출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은 "우선권 회복"에 관한 규정을 활용해보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12 개월의 파리협약의 우선권기간을 놓친 출원인에게 우선권 회복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PCT 규칙 26 의 2.3 및 49 의 3.2 참고).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결정은 수리관청이나 국내단계에서 지정관청이 건별로 내리는데, 특히 출원인이 "적절한 주의(due care)" 기준이 충족된다는 점을 입증하기를 원하는 경우 상세한 해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일부 관청은 해당 규칙들에 대한 상충사실을 통보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한국어) 참조).

³ (역주) PCT 수리관청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해당 조항에 따른 우선권 회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⁴ (역주) PCT 지정관청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해당 조항에 따른 우선권 회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CT 규칙 82 의 4: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에서 용무를 처리하는 데 적용 가능한 기한을 놓친 경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PCT 규칙 82 의 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해당 규칙에 기재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허용합니다. 해당 규칙의 혜택을 받으려면 출원인은 그러한 취지의 증거를 해당 기한이 만료된지 6 개월 이내에 해당 관청에 제시하고, 그때까지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해당 규칙에 따라 기한 충족 실패에 대한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관청,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이 내립니다. 단, 해당 규칙은 우선권기간과 국내단계 진입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CT 규칙 49.6⁵: PCT 출원인이 상기된 이유로 해당 기한 내에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면, 출원인은 PCT 규칙 49.6 에 따라 해당 지정관청에서 권리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정관청이 건별로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며, 해당 관청이 적절한 주의(due care)나 비고의성(unintentionality)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관청은 해당 규칙에 대한 상충사실을 통보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한국어) 참조).

놓친 기한이 지정 또는 선택관청에서 국내단계에서 처리될 일과 관련된 것이면,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해결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PCT 규칙 82 의 2.2 및, 그러한 국내법/지역법의 예로, 유럽 특허청에서의 "추가 처리(further processing)" 신청(EPC 규칙 135) 참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는 PCT 출원인 가이드의 각 국내편을 보시거나 해당 국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수수료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는, PCT 규칙 80.5(ii) 및 80.6, 82.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⁵ (역주) PCT 지정관청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해당 조항에 따른 권리회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PCT-SAFE 사용을 중단한 관청들

PCT 정보 업데이트

AU 호주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EP 유럽 특허청 (수수료)

GB 영국 (위치 및 우편주소,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IS 아이슬란드 (수수료)

MA 모로코 (수수료)

NZ 뉴질랜드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SA 사우디아라비아 (전화번호)

ZA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기관)

보충적 국제조사 관련 수수료 (유럽 특허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유럽 특허청)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PCT 출원인 가이드 (스페인어 버전)